

영등포구의회
제17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고기판의원 대표발의】



2013. 4. 29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00호로 2013년 4월 25일 고기판의원 외 6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, 재난대비,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·증대되고 있는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(안 제1조)

나.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구체화 함.(안 제5조)

다. 다양화·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통장 임무 정비

(안 제7조제1항각호<1~9호>)

-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(안 제7조제1항1호)
-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(안 제7조제1항2호)
-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(안 제7조제1항3호)
- 주민의 거주,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(안 제7조제1항4호)
-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(안 제7조제1항5호)
-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·관리 협조(안 제7조제1항6호)
- 각종 사건·사고 보고와 풍·수해, 제설 등 지원(안 제7조제1항7호)
-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(안 제7조제1항8호)
- 각종 고지서,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
(안 제7조제1항9호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고 통장의 기능을 행정 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에 본조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,
- 안 제5조에는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위촉 해제된 통장은 3년 이내에는 재위촉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는 재난대비,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통장의 임무를 보강 및 정비함.

○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위촉 해제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, 1988년 제정 이후 동 기능 전환 등을 거치면서 일선행정의 보조자 기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임무를 보강 및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
○ 재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, 통장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의 행정수요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동

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,
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
것으로 사료됨.